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170 |
|----------|------|

제출연월일 : 2009. 6. 30.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정이유

○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대여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농촌일손부족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노동력 절감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기계 대여은행은 농기계 대여, 사용료 징수, 농기계이용현장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 함(안 제4조)

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관리요원을 둠(안 제6조)

다. 사용허가 기준은 1농가당 1대 기준으로 2일 이내로 함(안 제8조)

라. 대여(사용)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 1일 최저 5,000원으로 하고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구입가의 0.2% 기준)을 적용 5,000원 단위로 정함(안 제9조)

마. 농업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등 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허가취소 또는 정지하고 대여 농기계의 출고 후에 일어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짐(안 제13조, 제14조)

바. 대여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 및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9- 491호(2009. 5. 25 ~ 2009. 6. 15)

- 의견 제출사항 :
- 나.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 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
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다. 합 의 : 관련부서 합의됨
-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 경영개선,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이하“대여은행”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여은행의 위치) 대여은행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은행"이라 함은 고성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여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차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대여은행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고성군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대여은행의 기능) 대여은행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3. 연중 적기영농추진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대여은행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준비로 한다.

② 대여은행의 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대여은행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관리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대여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⑤ 대여은행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관리요원) 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 시켜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농기계의 사용허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사용신청·접수순위에 따라 사용허가토록 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2일로 한다. 다만, 사용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는 농업용에 한한다.

③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 일에서 입고 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대상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⑤ 사용자가 임차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고성군세입·세출 외 현금 납부규정에 의하여 고성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해 임차할 경우 절차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

를 받고자하는 사용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 감면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사용료 면제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사용료청구(별지4호서식)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나머지일의 사용료

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

제12조 (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

우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자 보호) 대여은행의 운영요원 및 상·하차장비, 운송용장비(차량 포함) 등은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계획 및 보고) 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은 당해사업 전년도 12월에, 사업운영결과는 당해사업 다음해 1월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치대장) 대여은행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1. 농기계 대여사용 허가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농기계 대여은행 장비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8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표(구입가격 × 0.2%기준 5,000원 단위로 절사적용) | | | |
|---|-----|---------|-----|
| 구 입 금 액 | 일 수 | 임대료(원) | 비 고 |
| 300만원미만 | 1 | 5,000 | |
| 300만원이상~700만원미만 | 1 | 10,000 | |
| 700만원이상~900만원미만 | 1 | 15,000 | |
| 900만원이상~1200만원미만 | 1 | 20,000 | |
| 1200만원이상~1400만원미만 | 1 | 25,000 | |
| 1400만원이상~1700만원미만 | 1 | 30,000 | |
| 1700만원이상~1900만원미만 | 1 | 35,000 | |
| 1900만원이상~2200만원미만 | 1 | 40,000 | |
| 2200만원이상~2400만원미만 | 1 | 45,000 | |
| 2400만원이상~2700만원미만 | 1 | 50,000 | |
| 2700만원이상~2900만원미만 | 1 | 55,000 | |
| 2900만원이상~3200만원미만 | 1 | 60,000 | |
| 3200만원이상~3400만원미만 | 1 | 65,000 | |
| 3400만원이상~3700만원미만 | 1 | 70,000 | |
| 3700만원이상~3900만원미만 | 1 | 75,000 | |
| 3900만원이상~4200만원미만 | 1 | 80,000 | |
| 4200만원이상~4400만원미만 | 1 | 85,000 | |
| 4400만원이상~4700만원미만 | 1 | 90,000 | |
| 4700만원이상~4800만원미만 | 1 | 95,000 | |
| 4800만원이상~5000만원미만 | 1 | 100,000 | |
| 5000만원이상 농기계는 구입가격의 0.2% 적용 임대료 산정 | | | |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사용 신청서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농기계 대여은행의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 다 음 -

1. 농기계명 :
2. 수 량 : 대
3.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일간)
4. 작업종류 :
5. 작업 량 :
6.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 부과된 사용료를 기간 내에 정히 납부하겠음.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키겠음.
 -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겠음.
 - 농기계를 망실·훼손 시는 원상복구 하겠음.
 - 출고 후부터 입고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음.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경남 고성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휴대폰 :)

담당자 확인 : (인)

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반납확인

| 반납일 | 반납자 | 이상유무 | 확인자 | 비고 |
|-----|-----|------|-----|----|
| 월 일 | | | | |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 대여 사용 허가대장

| 허가 번호 | 신 청 인 | | 허가 월일 | 사 용 기 대 명 | | 사 용 기 간 | 사 용 자 | 입출고일 | | 결 재 | | |
|----------|-------|-----|----------|-----------|---------|------------|-------|------|---|-------|-----|-----|
| | 주 소 | 성 명 | | 기 대 명 | 기 대 번 호 | | | | | 담 당 자 | 담 당 | 과 장 |
| | | | | | | | | 출고 | / | | | |
| | | | | | | | | 입고 | / | | | |
| | | | | | | | | 출고 | / | | | |
| | | | | | | | | 입고 | / | | | |
| | | | | | | | | 출고 | / | | | |
| | | | | | | | | 입고 | / | | | |
| | | | | | | | | 출고 | / | | | |
| | | | | | | | | 입고 | / | | | |
| | | | | | | | | 출고 | / | | | |
| | | | | | | | | 입고 | / | | | |
| | | | | | | | | 출고 | / | | | |
| | | | | | | | | 입고 | / | | | |
| | | | | | | | | 출고 | / | | | |
| | | | | | | | | 입고 | / | | | |
| | | | | | | | | 출고 | / | | | |
| | | | | | | | | 입고 | / | | | |
| | | | | | | | | 출고 | / | | | |
| | | | | | | | | 입고 | / | | | |
| | | | | | | | | 출고 | / | | | |
| | | | | | | | | 입고 | / | | | |
| | | | | | | | | 출고 | / | | | |
| | | | | | | | | 입고 | / | | | |

